

안심소득제 (연구) 비판*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서로 경합하는 여러 제도 간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공정한 비교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비교가 선행 연구 검토가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데, 또한 정책 효과의 비교 상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본고의 초고는 2018년 1월 24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84회 콜로키움에서 발표되었으며, 이 중 일부 내용은 팟캐스트 이렛타 82회에서 소개되었음을 밝힙니다. 초고에 대해 유익한 제안과 논평을 해 주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님과 조혜경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기성, 변양규(2017)는 이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반면 교사가 된다. 저자들은 그 연구에서 기본소득제와 자신들이 “한국형 음 소득세”로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비교한 바 있다. 박기성과 변양규는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지니계수 0.344를 0.259로 0.085(24.7%)만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지니계수 0.298을 0.259로 0.039(13.1%)만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다. 한편 동일한 예산의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지니계수를 0.050(14.5%)만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지니계수를 0.004(1.3%)만큼 낮추는 데 그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안심소득제 수준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낳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제 하의 추가 소요 예산은 약 173조7,384억원으로 안심소득제의 추가 소요 예산 25조3,076억보다 훨씬 더 크므로,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역설한다.

본고는 박기성, 변양규(2017)가 제안한 안심소득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가 아님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그들의 연구가 조세 및 급여 체계(tax and transfer system(또는 tax and benefit system))가 빈곤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계의 통상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이 택한 방식이 안심소득제에 유리한, 즉 기본소득제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편향된(biased) 분석 결과를 산출함이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공정한 비교는 어떠한가 하는가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음의 소득세와 기본소득제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상호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2. 안심소득제란 무엇인가

박기성, 변양규(2017: 63)가 소개하는 안심소득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강조는 이진민).

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그리고 국세청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안심소득제를 새로 도입한다.

② 안심소득제를 통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며,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세 제도를 고스란히 유지한다.

③ 안심소득제 지원 가구에 적용되는 세율(“안심소득세율”)은 40%로 한다.

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아래에서 w 는 임금률이고, t 는 노동시간이다.)

$$\text{안심소득: } 0.4 \times (5,000\text{만원} - wt) \dots\dots (1)$$

$$\text{안심소득제 지원 가구의 가치분소득: } wt + 0.4 \times (5,000\text{만원} - wt) = 2,000\text{만원} + 0.6wt \dots\dots (2)$$

더욱 구체적으로는, 가구 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65쪽).

가구 규모별 기준소득 = 1,250만원 × 가구원 수

안심소득제 지원금 = (가구 규모별 기준소득 - 안심소득제 인정
소득) × 40% …… (3)

여기서 “기준소득”은 안심소득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을 의
미하며, “인정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소득을
뜻한다.

비록 기준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달라지기는 하지만 가구원 수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이른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in consumption)’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기존 사회
보장제도 아래 전통적인 현금급여와는 구별되지만 오히려 기본소득
과의 비교에는 용이한 지점이 있다(물론 다음 각주에서 지적하는 바
와 같이, 6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면이 있다). 수식을 통
해, 안심소득제 인정소득이 0인 경우 안심소득제 지원금으로 1인 가구
는 500만원, 2인 가구는 1,000만원, 3인 가구는 1,500만원, 4인 가구는
2,000만원, 5인 가구는 2,500만원을 받게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식 (1)~(3)만 본다면, 혹자는 안심소득제를 최소한 1인당 500만원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G’))을 보장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40%(조세환수율(tax-back rate 또는 take-back rate ‘t’))를 세금으로 걷는, 그리
고 1인당 1,250만원을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으로 하는 ‘음의 소득제’

* 위의 산식에 따르면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 규모별 기준소득이 5인 가구의 6,250만원보
다 더 커야 한다. 하지만 저자들이 예시로 들고 있는 바에 의하면 6인 이상 가구에도 5인 가구
의 6,250만원이 그대로 적용되므로(65쪽), 6인 이상 가구도 안심소득제 인정소득이 0인 경우
에 안심소득제 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박기성과 변양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6인 이상 가구도 식
(3)을 그대로 따른다고 가정한다.

의 일종으로 오해할지도 모른다.

3. 안심소득제 비판

3.1. 안심소득제는 과연 ‘음의 소득세’인가?

하지만 엄밀히 보자면 저자들이 제안하는 안심소득제는 ‘음의 소득세’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음의 소득세와는 달리 안심소득제는 재원 마련 방안을 제도 내에 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의 2절 ②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자.

그들은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안심소득제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25조3,07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소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blackboxing”). 즉 안심소득제 순수혜 대상이 아닌 가

* 이는 그들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면세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선 기존 세제를 그대로 인정했다. 따라서 부분적 음소득세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고려는 자신들의 제안을 ‘안심소득제’라 한 데서도 드러난다.”(복거일, 김우택, 이영환, 박기성, 변양규, 2017: 200) “누진세의 이론적 문제들과 현실적 남용 때문에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단일세로 기울었는데, 완전한 음소득세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단일세가 도입된다. ‘안심소득제’는 이런 과감한 개혁의 시도가 한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정치적 현실과 타협해서 나온 정책이다. 이는 현명한 판단이다. 근본적 세제 개혁은 나온 적이 드물고 성공한 적은 더욱 드물다.”(앞의 책: 201) 이를 통해 우리는 재원 마련 방안 내지 과세 방안이 통째로 빠져 있는 ‘안심소득제’의 구상은 그들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복지 급여 확대와 조세개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뚜렷한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읽을 수 있다. 물론 4절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에 대한 그들의 ‘무지’ 내지 혼란 역시 발견된다.

** 이는 안심소득제에 적용되는 개별 가구 지원금 총액 37조6,828억원에서 안심소득제를 시행함으로써 대체하는 사회수혜금(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조3,752억원을 공제하여 구한 것이다(박기성, 변양규, 2017: 63, 66~67).

구, 즉 순부담 가구에 대한 추가 과세가 전혀 가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중 소수에 속하는 일부 가구는 안심소득제 시행으로 인해 대체되는 사회수혜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겠지만 그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그 크기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6~10 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정도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21만 원에서 74만 원 수준에 불과”(박기성, 변양규, 2017: 73)하고, 안심소득제 도입으로 인한 ‘소득 증가(또는 유지) 가구 및 인구’ 비율이 6~10분위에서도 모두 80%를 상회하며, 심지어 10분위의 경우에는 가구 면에서나 인구 면에서나 모두 80%대에 머무른 6~9분위와는 달리 91%를 넘는 수치를 기록한 것은 ‘안심소득제’의 (특)장점이 아니라 순부담 가구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을 결여한 그들의 체계 내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도출된 ‘인공물(artificialities)’에 지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25조3,076억원은 안심소득제 ‘밖에서’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무언가로 설정되어 있는 셈인데, 재원이 어떤 식으로 마련되느냐에 따라 빈곤의 비율과 심도, 소득분포가 옹당 달라질 것이므로 그들의 연구는 ‘반쪽짜리 연구’,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연구’라 할 수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자면, 음의 소득세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먼저 음의 소득세는 제도 설계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비례세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진세나 심지어 역진세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음의 소득세는 보장소득이 빈곤선 수준인 사회배당 유형(social dividend type(SDT))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빈곤선 아래여서 빈곤선과의 격차(gap)를 줄이도록 설계된 빈곤 갭 유형(poverty gap

type(PGT)일 수도 있다(Sommer, 2016: 62, 64~68). 또한 음의 소득세는 다양한 소득 원천(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에 대해서 단일한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천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이든 음의 소득세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소득을 갖는 계층으로부터 '양의 세금'을 거둬서 손익분기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계층에게로 소득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다시 말하거니와, '양의 세금' 부분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안심소득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음의 소득세라고 말할 수 없다.

3.2. 분석 방법상의 오류: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개념의 구분, 그리고 통상적인 분석 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조세 및 급여 체계가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소득market income, 총소득gross income,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등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시장소득은 공적 이전소득 지급과 과세가 둘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before transfers and taxes")의 소득을 의미하며(OECD, 2016),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 사업(및 부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가구 간 이전, 할인 혜택, 기타 이전소득)'으로 정의된다(이병희, 반정호, 2008: 69; 박종규, 2017: 각주 2). 다음으로 총소득gross income은 과세는 반영하지 않고 공적 이전소득 지급만을 반영한 상태("after transfers and before taxes")의 소득을 말하며(OECD, 2016),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에는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소

득을 더한 값, 즉 경상소득에 상응한다(유경준, 2003: 표 1). 마지막으로 가치분소득은 공적 이전소득 지급과 과세가 모두 반영된 상태 (“after transfers and taxes”)의 소득을 뜻하며(OECD, 2016), 우리나라의 경우 총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뺀 값과 같다(유경준, 2003: 표 1, 60; 이병희, 반정호, 2008: 71; 박종규, 2017: 각주 3).

그렇다면 특정 국가의 조세 및 급여 체계(tax and transfer system) 전체가 (또는 일부 복지정책이) 빈곤과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비교해야 할까? 당연히 공적 이전소득 지급과 과세가 둘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소득인 ‘시장소득’과 공적 이전소득 지급과 과세가 모두 반영된 상태의 소득인 ‘가치분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물론 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따라서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비교적 적은 특정한 단일 복지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서는 ‘시장소득과 총소득을 비교하는 경우’와 ‘시장소득과 가치분소득을 비교하는 경우’의 분석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며, 과세에 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장소득과 총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요되는 추가 재원 규모가 25조원을 상회하는 ‘안심소득제’와 같은 제도의 경우에는 시장소득과 총소득을 비교하느냐 아니면 시장소득과 가치분소득을 비교하느냐는 핵심적인 차이를 낳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시장소득과 가치분소득을 비교해야지 시장소득과 총소득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유경준, 2003; 이병희, 반정호, 2008; 박종규, 2017; OECD, 2016 등 다수)는 조세 및 급여 체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면서 ‘시장소득과 총소

득'을 비교하지 않고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비교하고 있다. 선행 연구의 언급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자.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차감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소득의 불평등 지표와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병희, 반정호, 2008: 71)

한국의 지니계수와 외국의 지니계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소득의 정의에 대한 원천적인 비교를 하지 않아 비교표상에 있는 Atkinson 등의 지니계수는 조세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KHPS의 경우 모두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총소득(gross income)을 적용시킨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의 국제 비교는 옳다고 볼 수 없다. (유경준, 2003: 65)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도의 국제비교는 공적이전과 직접세 납부 이전[이전]의 소득에 대한 불평등도를 비교하는 것이며, 가처분소득에는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이 더해지고 사회보장부담금과 직접세의 조세 항목을 차감한 소득의 불평등도를 비교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양자의 분리 비교는 세전 및 세후 그리고 공적 이전 지출 포함 여부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 비교를 통하여 정부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유경준, 2003: 67~68)

그렇다면 박기성, 변양규(2017)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비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소득과 총소득’을 비교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소요되는 추가 재원 규모가 25조를 상회하는 제도(‘안심소득제’)가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의 문제, 즉 과세 방안 내지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공백blank으로 남겨둔 채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비교에 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의 분석은 ‘시장소득과 총소득’의 비교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긴 하지만, 엄정한 의미에서 ‘시장소득과 총소득’의 비교라고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지닌다. 그것은 바로 25조3,076억원이 우리나라 외부에서(예를 들어, 국제 원조) 또는 가구의 밖에서(예컨대, 법인세) 마련되지 않는 이상, 개별 가구의 과세 전 어떤 소득(원천)으로부터 마련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개별 가구의 총소득 역시 필연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자들은 안심소득제 도입으로 인한 노동 유인 증가, 이를 통한 경제성장 증대를 통하여 약 25조 3,076억원 또는 그 이상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그러할 것인지도 문제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추가적인 경제성장은 개별 가구의 소득을 필연적으로 변화시킬 것인데, 이를 반영하여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극히 자의적인 추가 가정들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분석 자체를 무용하

* 저자들의 다음과 같은 서술에도 주목하라. “안심소득제 실시에 필요한 예산의 순증은 25.3조원이다. 이 정도의 예산 증가는 2017년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노동 분야 사업 예산……을 절약

게 만든다.

4.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4.1. 음의 소득세와 기본소득제에 관한 박기성, 변양규의 잘못된 이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영어 표현으로 “Do not compare apples and oranges(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지 말라)”가 있다.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비교하면서, 박기성과 변양규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기본소득을 ‘절편’만 있고 ‘기울기’는 없는 제도라고 말한다(박기성 교수의 토론 발언, 2017년 12월 14일). 즉 저자들은 기본소득(또는 적어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소속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에서의 여러 기본소득 제안들)을 조세체계는 전혀 손보지 않은 채, 또한 세율 조정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급여로 간주하는 듯하다. 반면 음의 소득세는 ‘절편’과 ‘기울기’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제도라고 주장한다(복거일, 김우택, 이영환, 박기성, 변양규, 2017: 197).

하고 안심소득제 실시로 인한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등으로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안심소득제가 대한민국의 확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박기성, 변양규, 2017: 74) 하지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안심소득제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미 재원 조달 방안, 즉 증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에 포함시켰어야 했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이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할 경우 지니계수는 불변이어야 한다”(복거일, 김우택, 이영환, 박기성, 변양규, 2017: 각주 66)라는 표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지

니계수 산식은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quad (\text{여기서 } n \text{ 은 전체 인구, } \mu \text{ 는 평균소득, } y_i \text{ 은}$$

i 의 소득, y_j 은 j 의 소득)

인데*, 시장소득(‘before transfers and taxes’)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after transfers and taxes’)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과세 후(‘after taxes’)와 과세 및 급여 후(‘after transfers and taxes’)라는 두 단계로 나누

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모든 국민에게 동일 액수를 지급하면 각자의 절대적 소득 차이($|y_i - y_j|$)는 달라지지 않지만, 이러한

* 지니계수 산식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2n^2\mu$ 는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다. 지니계수의 최댓값은 1인데, 이는 한 사람이 사회 전체의 소득, 즉 $n\mu$ 를 독차지하게 되고(여기서는 이 사람을 ‘독점적 소유자 Exclusive Possessor’의 약어인 ‘EP’라고 부르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0의 소득을 갖게 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면 분자인 $\sum_{i=1}^n \sum_{j=1}^n |y_i - y_j|$ 에서 EP가 i 자리에 들어갈 경우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n 명과 비교하게 되고 각각의 격차는 $n\mu$ 가 되어 둘을 곱하면 $n^2\mu$ 가 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자신과 비교할 때에는 격차가 0이므로 $n^2\mu - n(=n\mu(n-1))$ 이 되지만, n 은 $n^2\mu$ 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n^2\mu$ 와 $n^2\mu - n$ 은 n 과 μ 값이 큰 경우 거의 일치한다.) 이는 EP가 j 자리에 들어갈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모두 합하면 $2n^2\mu$ 가 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2n^2\mu - 2n(=2n\mu(n-1))$ 이 되지만, $2n$ 은 $2n^2\mu$ 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2n^2\mu$ 와 $2n^2\mu - 2n$ 은 n 과 μ 값이 큰 경우 거의 일치한다.) 이처럼 소득분포가 완전히 불평등할 때 지니계수는 1이어야 하므로 분모 자리에는 $2n^2\mu$ 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분모에 들어가는 $2n^2\mu$ 는 분자에 들어가는 최댓값인 $2n^2\mu - 2n$ 보다 항상 크므로, 이러한 산식은 지니계수가 1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지급을 위해서 과세가 이루어진 후(‘after taxes’)의 평균소득(여기서는 μ_{at} 로 표기)과 과세와 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후(‘after transfers and taxes’)의 평균소득(여기서는 μ_{atat} 로 표기)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μ 가 분모 자리에 들어가고 후자(μ_{atat})가 전자(μ_{at})보다 당연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이론적으로 지니계수는 ‘불변’이 아니라 ‘감소’하게 된다. 그들은 기본소득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과세 및 급여 체계의 소득재분배 기제에 관하여 혼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후술할 “재정 환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박기성, 변양규의 이해에서 발견되는 모순, 역설, 오류

박기성, 변양규의 이해에서는 심각한 모순, 역설 내지 오류가 발견된다. 첫째, 그들은 음의 소득세를 선호하지만 “한국형 음 소득세”로 자신 있게 내세운 안심소득제는 실은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반쪽자리’ 음의 소득세, 더 심하게 말하자면 음의 소득세조차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들이 실제 현실에서 낮은 수준의 보장소득을 선호하고 고소득층의 증세를 최소화하면서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를 중심으로 재원 마련을 구상하는 것을 고수한다면, 그 제도가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매우 제약적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둘째, 명목조세 면에서 안심소득제보다 그 규모가 훨씬 더 큰 다

양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들(백승호, 2010; 강남훈, 2010; 2015; 2017)은 자신 있게 재원 마련 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명목조세 면에서 그 규모가 훨씬 작은 안심소득제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 확대 요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파가 좌파에게 재원 마련 방안을 뚜렷하게 제시하라고 비판하기 일췌인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안심소득제 제안과 기본소득 제안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전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셋째, 행정, 심리, 행태, 정치 등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뚜렷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① 재원 조달이 개인소득세로 국한되어야 함, ② 급여와 납세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가 충족되어야 함, ③ NIT의 양의 과세 부분과 음의 과세 부분에서 동일한 소득 표준이 채택되어야 함, ④ 노동 심사가 없어야 함)이 충족될 경우에는 적어도 ‘경제학적으로는’ 음의 소득세와 기본소득 간 동등성equivalence이 주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32~40).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그리 적합하지는 않지만, “소득세와 보조금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룰 수” 있는 것,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복지보조금을 경제학이 지닌 조세 이론의 틀로 다룰 수” 있는 것(복거일, 김우택, 이영환, 박기성, 변양규, 2017: 197)은 음의 소득세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기본소득 역시 갖추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그들은 안심소득제 도입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과세 방안)을 무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직접 비교함으로써, 기본소득 제도에서의 명목조세와 순조세 간 차이를 교묘하게 회

피한다.* 예를 들어,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고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월 평균 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A라는 사람의 경우 명목조세로는 연 600만원(= 50 × 12)을 납부하지만, 순조세로는 연 120만원(= (50-40) × 12)밖에 내지 않는다. 기본소득 제도에서 명목조세와 순조세의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은 “조세나 정부지출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인 “재정 환상fiscal illusion”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강남훈, 2017: 16).** 박기성과 변양규는 “기본소득제 하에서의 분배 방법” 또한 안심소득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심소득제 도입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인 25조3,076억원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양 제도의 효과를 비교한다(박기성, 변양규, 2017: 67). 결국 25조3,076억원을 가구 규모별 기준소득 미만의 가구에에만 국한하여 그것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안심소득제’ 방안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방안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굳이 분석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전자가 후자에 비해 빈곤과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는 양 제도의 도입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과세 방안)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음의 소득세와 기본소득은 적어도 ‘경제학적으로는’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양 제도를 ‘명목조세’ 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순조세’ 면에서 비교해야 공정하다는 것을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마치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 백승호(2010: 194)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시스템과의 결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세시스템과 결합된 기본소득 모델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검토하는 데 더 타당하다.”

** 기본소득을 둘러싼 재정 환상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는 강남훈(2017: 16~17)을 참조.

이와 관련하여, 비례세인 소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여기에 토지보유세와 생태세를 부차적 재원으로 삼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10% 비례세인 소득세와 일부 지출 전환으로 월 20만원, 토지보유세로 월 5만원, 생태세로 월 5만원 재원 조달)에서의 순조세 규모가 명목조세의 약 50%임을 추가로 고려해 보자(강남훈, 2017). 또한 면세 구간이 전혀 없고 $1/n$ 로 평등하게 분배되는 $t\%$ 비례세인 소득세-기본소득 제

도 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UBI-FIT)는 특정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바 있음을 참고해 보자(이건민, 2017a; Miller, 2017: 245~246).^{*} 이뿐만 아니라, 강남훈(2017)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자료로서 박기성, 변양규(2017)가 활용한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와는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대표성을 인정받는 미시자료이자 비슷한 시기의 동일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을 감안해 보자. 아울러 음의 소득세와 기본소득 간 ‘경제학적’ 동등성에 관한 위에서의 논의에도 함께 주목해 보자.

그렇다면 동일한 수준의 지니계수를 달성하기 위한 명목조세 규모가 안심소득제는 약 25조3,076억원에 불과한 반면 기본소득제의 경우 약 173조7,384억원이 소요된다는, 즉 안심소득제에 비해 약 6.87배가 된다는 박기성, 변양규(2017: 각주 14)의 분석 결과는 대체 어떻게

* 이상의 논의는 조세 및 급여 체계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 내지 1차 효과(first-order effects)만을 고려했다는 점, 즉 노동 유인과 노동 공급 상의 변화를 감안한 2차 효과(second-order effects)와 노동 수요를 비롯한 거시경제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3차 효과(third-order effects)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한계를 지닌다(이건민, 2017b: 각주 3). 하지만 박기성, 변양규(2017)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효과조차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면서 2차 효과 및 3차 효과 분석과의 구분을 흐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다.

된 것일까? 6.87배라는 값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대략 2배를 중심으로 그보다 조금 더 작거나 큰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우리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는 수치이다.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것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심소득제’의 (특)장점이 아니라 순부담 가구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을 결여한 그들의 체계 내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도출된 ‘인공물artificiality’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안심소득제’ 논의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서서, 동일한 수준의 지니계수를 달성하기 위한 명목조세 규모 면에서 ‘특정 기본소득제’가 ‘특정 음의 소득세’의 약 6.87배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1/n$ 로 평등하게 분배되는) ‘특정 기본소득제’의 재원

조달 방식이 ‘극히 역진적’일 경우에만, 그리고/또는 이에 더하여 빈곤층이 아니라 부유층에게 더 많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극히 기이한’ 형태의 ‘특정 기본소득제’란 현실에 전혀 기초하지 않은, 정치경제적으로 거의 실현 불가능한 무엇일 뿐이며, 이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출현한 취지와도 한참 동떨어져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4.3.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공정한 비교 및 다양한 제도들 간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를 공정하게 비교하는 방법일까? 대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상기 안심소득제 환경에서 조세환수율 40%

를 손익분기점 이상의 소득 계층에게로까지 확장한다. 아울러 안심소득제에 적용되는 소득을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인소득 전체로 확장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새로운 안심소득제’(음의 소득세)는 최소한 1인당 500만원(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을 보장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40%를 세금으로 걷는, 1인당 1,250만원을 손익분기점으로 하는 음의 소득세가 된다.* 여기서 몇 가지 조건, 즉 ① 재원 조달이 개인소득세로 국한되어야 함, ② 급여와 납세의 개별화가 충족되어야 함, ③NIT의 양의 과세 부분과 음의 과세 부분에서 동일한 소득 표준이 채택되어야 함, ④ 노동 심사가 없어야 함이 ‘새로운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에 충족된다고 추가로 가정하자. 그렇게 하면 ‘새로운 안심소득제’는 1인당 연 5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모든 소득 구간에 대해서 40%를 과세하는 특정 기본소득 제도와 ‘경제학적으로는’ 정확히 동일해진다. 여기서 양 제도의 형태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행태적 변화 등이 없다고 아울러 가정한다면, 양 제도가 빈곤과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완전히 같을 것이다.

‘새로운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 간 동등성에 대한 조건들을 하나씩 완화해 보면 어떻게 될까? 첫째, ‘새로운 안심소득제’와는 달리 개인소득세에 국한되지 않은 재원을 추가로 가진 기본소득 제도는 ‘새로운 안심소득제’에 비해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더 큰 폭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추가 재원으로는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공유부^{共有}富로부터의 수익 등이 가능하다. 둘째, ‘새로운 안심소득제’보다 보장

* ‘안심소득제’는 음의 소득세가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안심소득제’는 음의 소득세다.

소득은 더 크게 하면서 세율 역시 더 인상시키는 기본소득 제도는 ‘새로운 안심소득제’에 비해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더 큰 폭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음의 소득세 간 효과 비교, 여러 가지 기본소득 제도 간 효과 비교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NIT①이라는 음의 소득세가 NIT②라는 음의 소득세보다 보장소득은 더 높고 세율 역시 더 크다면 NIT①이 NIT②보다 더 큰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낳을 것이다. UBI①이라는 기본소득 제도가 UBI②라는 기본소득 제도보다 지급액수가 더 높고 세율 역시 더 크다면 UBI①이 UBI②보다 더 큰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산출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자유기업원(구 자유경제원)이나 전경련에 친화적인 학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동질적이지는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부분의 이슈, 특히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이들이 대체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상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2014년 일군의 사람들이 ‘피케티 열풍’에 대비하여 불평등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빈곤이 문제이며, 따라서 선별적 복지만으로 충분하다고 강변했던 것(안재욱, 현진권 편, 2014)과 비교한다면*, 2017년 박기성, 변양규(2017)의 ‘안심소득제’ 제안은 비록 그것이 가진 다양한 한계(낮은 보장수준, 기존 복지 급여의 상당한 대체를 수반, 증세에 대

* 안재욱, 현진권 편(2014)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건민(2017c)을 보라.

한 소극적 자세 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과 요구가 갈수록 거세질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불가피하다는 정세 인식이 바탕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기본소득의 광풍”으로 인해 향후 기본소득의 지급 액수가 마치 “눈덩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이것을 우파적인 형태로 변형, 전유하려는 그들의 뚜렷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박기성 교수의 토론 발언, 2017년 12월 14일). 그러므로 일견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그들 스스로의 ‘진보’적 방향으로의 탈바꿈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변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들의 기민함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물론 학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성향,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자로서 자신의 정책적 견해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연구의 함의를 제안함에 있어, 또는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해서 치열하게, 진지하게 토론하고 경합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움에 있어 용어의 명확한 정의와 사용, 정확한 비교 대상의 설정 등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의 충실한 검토는 잠재적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며, 이는 연구자의 성실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박기성, 변양규(2017)는 이 점에서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리라 생각하며, 본고에서의 비판이 향후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를 둘러싼 학술 연구와 토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남훈(2010):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진보평론』 제45호.

강남훈(2015): 「한국에서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 모형」, 『녹색전환연구소 포럼 자료집』. (http://igt.or.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52187&sid=1864972f04b82fe7ed007acdb06b4291.)

강남훈(2017):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년 겨울 학술대회(경제학 공동 학술대회)(2월 10일 11~12시 반,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106호) 발표문.

박기성: ‘한국형 기본소득제 검토방안’ 토론회 토론 발언, ‘Agenda 2050’ 토론회. (2017년 12월 14일(목) 19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박기성, 변양규(2017):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0권 제3호.

박종규(2017): 「지니계수로 본 인구 고령화의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 『주간금융브리프』 제26권 제1호.

백승호(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3호.

복거일, 김우택, 이영환, 박기성, 변양규(2017):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진정한 한국적 분배 복지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안재욱, 현진권 편(2014):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백년

동안.

유경준(2003):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 정책연구』 제25(2)호.

이건민(2017a):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 『녹색전환 연구소 전환소식』 5월호. (http://igt.or.kr/index.php?document_srl=56704&mid=column.)

이건민(2017b): 「기본소득 정책 모의실험 연구의 성과와 한계」, 『비판사회정책』 제54호.

이건민(2017c):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일부 우파 경제학자’들의 (불)평등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비판」, 『진보평론』 제71호.

이병희, 반정호(2008): 「통계로 본 노동 20년: 소득분배(1982~2006)」. 『노동리뷰』 제39호.

Miller, Annie(2017): A Basic Income Handbook, Luath Press.

OECD(2016): “Income inequality remains high in the face of weak recovery”, Income Inequality Update (November), OECD.

Sommer, Maximilian(2016): A Feasible Basic Income Scheme for Germany: Effects on Labor Supply,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Switzerland.

Van Parijs, Philippe and Yannick Vanderborght(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